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재해보상 제심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소속기관으로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면서 인사혁신처 소속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을 이체하여 배정하고, 재해예방 등 공무원 건강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예방 정책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면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재해보상 심사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 및 5급 역량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성과급 여과를 급여정책과로 변경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 헌법·AI 등 교육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1명 (5급 1명) 및 국민 추천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인력 1명(일반임기제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공직자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이사항 없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재해예방정책담당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청구 제도에 관한”을 “청구 및 급여 등 관련 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사망자”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재해”를 “재해보상심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재해와 관련된 통계의 기획·분석
 14.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관리
 15. 정책자문단 등 민간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 ④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

한다.

1. 공무원 재해예방 관련 법령 제·개정
2.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3.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연구·조사 및 개선
4.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점검 및 컨설팅
5.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공무원 재해예방 문화 확산 및 민간 교류 협력 추진
7. 공무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8.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공무상 재해통계의 수집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제8조제3항제11호 중 “역량평가제도”를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역량평가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역량평가”를 각각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역량평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성과급여과·인재개발과 및 연금복지과”를 “급여정책과·인재개발과·연금복지과 및 성과평가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과급여과장”을 “급여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 보수관계 법령 제·개정안 협의

13. 민간의 임금, 표준 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
14. 외국정부 공무원 보수제도 조사·연구
1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수당등 지급액, 지급 범위, 지급방법에 대한 협의
17. 각 부처 보수관련 업무의 지원

⑥ 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운영·개선
2. 성과계약 등 평가, 근무성적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 다면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4.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
5. 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
6. 공무원 성과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7.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성과평가제도 실태 조사
8. 5급 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9. 5급 역량평가제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연구·개선
10. 5급 역량평가 모델 및 과제 개발
11. 5급 역량평가 대상자의 선발·관리 및 감독

제4장의2(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제15조의2(사무국)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5급”을 “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으로 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 중 “별표 5와”를 “별표 6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400”을 “414”로, 일반직 계 “399”를 “413”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4”를 “16”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4”를 “25”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을 “22”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0”을 “24”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1”을 “2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399”를 “413”으로, 일반직 계 “398”을 “412”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4”를 “16”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4”를 “25”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을 “22”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0”을 “24”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2”를 “2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52”를 “150”으로, 일반직 계 “151”을 “149”로, 행정사무

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3”을 “22”로, 행정주사보 “8”을 “7”로, 비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150”을 “148”로, 일반직 계 “149”를 “147”로,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3”을 “22”로, 행정주사보 “9”를 “8”로, 비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기존 별표 5를 별표 6으로 수정하고,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인사관리국 성과평가과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를 신설한다.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별표 5를 신설하고, 종전의 별표 7을 삭제한다.

총리령 제184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및 [별표3의 2]의 하단 비교의 변경사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5]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원표
(제15조의2 본문 관련)

총계	8
일반직 계	8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생략)	제6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해보상정책관 밑에 재해보상정책담당관, <u>재해보상심사담당관</u>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u>재해예방정책담당관</u> , <u>재해보상심사담당관</u> ----- ----- -----.
③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③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u>	<u><삭 제></u>
6. 「 <u>공무원 재해보상법</u> 」 제52조에 따라 <u>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삭 제></u>
7. 「 <u>공무원 재해보상법</u> 」에 따른 심사 <u>청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u>	7. ----- ----- <u>청구 및 급여 등 관련 제도</u>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u>공무원의 순직 및 위험직무 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u>	9. <u>공무원 또는 공무원수행사망자</u> ----- -----

10. 공무수행사망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
한 연구 및 개선

1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2. (생 략)

<신 설>

<삭 제>

11. (현행과 같음)

1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
된 소송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재해와 관련된 통계
의 기획·분석

14.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위
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
독·관리

15. 정책자문단 등 민간네트워
크 구성·운영 및 공무원 재
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교류
·협력

16. (현행 제12호와 같음)

④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
을 보좌한다.

1. 공무원 재해예방 관련 법령
제·개정

2.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
책의 수립·총괄

3.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
책연구·조사 및 개선

④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1. ~ 5. (생략)

6.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7. (생략)

8. 공무원 재해와 관련된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9.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관리

제8조(인재채용국) ①·② (생

4.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점검 및 컨설팅

5.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공무원 재해예방 문화 확산 및 민간 교류 협력 추진

7. 공무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8.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공무상 재해통계의 수집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⑤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7. (현행과 같음)

8. ---- 재해보상심의-----

<삭제>

제8조(인재채용국) ①·② (현행

략)

③ 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역량평가제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연구·개선

12. 역량평가 모델 및 과제 개발

13. 역량평가 위원의 위촉·양성

14. 역량평가 대상자의 선발·관리 및 감독

15. · 16. (생략)

④ ~ ⑦ (생략)

제10조(인사관리국) ① (생략)

② 인사관리국에 성과급여과·인재개발과 및 연금복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성과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인사 제도의 운영·개선

과 같음)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11.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역량평가제도 -----

12.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역량평-----

13.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역량평-----
-

14.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역량평-----

15. · 16.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사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급여정책과·인재개발과·연금복지과 및 성과평가과-----

-----.

③ 급여정책과장-----
-----.

<삭제>

2. <u>성과계약 등 평가·근무성적 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 영</u>	<u><삭 제></u>
3. <u>다면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u>	<u><삭 제></u>
4. <u>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u>	<u><삭 제></u>
5. <u>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u>	<u><삭 제></u>
6. <u>공무원 성과관리에 관한 교 육·홍보</u>	<u><삭 제></u>
7. <u>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성과평가제도 실태 조사</u>	<u><삭 제></u>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u>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보수실태 조사</u>	<u><삭 제></u>
<u><신 설></u>	12.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 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 관 보수 관계 법령 제·개정 안 협의
<u><신 설></u>	13. <u>민간의 임금, 표준 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 사</u>
<u><신 설></u>	14. <u>외국정부 공무원 보수제도 조사·연구</u>
<u><신 설></u>	1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정」 제3조에 따른 수당등 지

12. (생략)

<신설>

④·⑤ (생략)

<신설>

급여, 지급범위, 지급방법에
대한 협의

16. (현행 제12호와 같음)

17. 각 부처 보수관련 업무의 지
원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
사제도의 운영·개선

2. 성과계약 등 평가, 근무성적
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
영

3. 다면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4.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

5. 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

6. 공무원 성과관리에 관한 교
육·홍보

7.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성과평가제도 실태 조사

8. 5급 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
립 및 실시

9. 5급 역량평가제도 및 역량강
화 프로그램의 연구·개선

<u><신 설></u> <u><신 설></u>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 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 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u><신 설></u> 제20조(평가대상 조직) 인사혁신 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 체적인 사항은 <u>별표 5</u>와 같다.	<u>10. 5급 역량평가 모델 및 과제 개발</u> <u>11. 5급 역량평가 대상자의 선 발·관리 및 감독</u> <u>제4장의2</u> <u>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u> <u>사무국</u> <u>제15조의2(사무국) 사무국장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 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 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5급 1명) 및 디 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u> 제20조(평가대상 조직) ----- ----- ----- <u>별표 6</u>과 -----.
---	---

제20조의2(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① (생략) ②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u>별표 6</u>과 같다. <u>제21조(한시정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둔다.</u> 총리령 제184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5급공채팀은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제20조의2(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별표 7</u>-----. <u><삭 제></u> 총리령 제184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7</u> <u>년 12월 31일</u>-----.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		•		•			
			400		414			+14	
일	반	직		•		•			
계		•		•		•			
			399		413			+14	
		•		•		•			
		•		•		•			
서	기	관		•		•			
또	는	과		•		•			
학	기	술		•		•			
서	기	관		•		•			
			14		16			+2	
		•		•		•			
		•		•		•			
서	기	관		•		•			
•	과	학		•		•			
기	술	서		•		•			
기	관	•		•		•			
행	정	사		•		•			
무	관	•		•		•			
공	업	사		•		•			
무	관	•		•		•			
시	설	사		•		•			
무	관	•		•		•			
관	또	는		•		•			
전	산	사		•		•			
무	관			•		•			
			24		25			+1	
		•		•		•			
		•		•		•			
행	정	사		•		•			
무	관	•		•		•			
또	는	전		•		•			
산	사	무		•		•			
관				•		•			
			16		22			+6	
		•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 •	• <u>20</u> • •	• <u>24</u> • •	+4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	<u>21</u> • •	<u>22</u> • •	+1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399</u>	• <u>413</u>	+14
일반직 계	• • <u>398</u>	• • <u>412</u>	+1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u>14</u>	• • <u>16</u>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또는 전산사무관	• • <u>24</u>	• • <u>25</u>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 <u>16</u>	• • <u>22</u>	+6
• •	•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u>20</u>	<u>24</u>	+4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22</u>	<u>23</u>	+1
•	•	•	
•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52</u>	• <u>150</u>	-2
일반직 계	• • <u>151</u>	• • <u>149</u>	-2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 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u>23</u>	• <u>22</u>	-1
행정주사보	• <u>8</u>	• <u>7</u>	-1
	•	•	
	•	•	

비고	임기제 교수요원 (가급) 정 원 5명 중 1명은 기 획재정부 소속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 무원으로, 1명은 법 제처 소속 3급 또는 4급 일반 직공무원 으로 각각 대체하여 보할 수 있다.	임기제 교수요원 (가급) 정 원 5명 중 1명은 <u>기 획예산처</u> 소속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 무원으로, 1명은 법 제처 소 속 3급 또 는 4급 일 반직공무 원으로 각각 대 체하여 보할 수 있다.	
----	---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50</u>	• <u>148</u>	-2
일반직 계	• • <u>149</u>	• • <u>147</u>	-2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 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u>23</u>	• <u>22</u>	-1
행정주사보	• <u>9</u>	• <u>8</u>	-1
•	•	•	
•	•	•	

비고	임기제 교수요원 (가급) 정 원 5명 중 1명은 기 획재정부 소속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 무원으로, 1명은 법 제처 소속 3급 또는 4급 일반 직공무원 으로 각각 대체하여 보할 수 있다.	임기제 교수요원 (가급) 정 원 5명 중 1명은 <u>기 획예산처</u> 소속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 무원으로, 1명은 법 제처 소 속 3급 또 는 4급 일 반직공무 원으로 각각 대 체하여 보할 수 있다.	
----	---	---	--